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진료거부 금지 규정의 적용 주체를 종전의 수의사에서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로 확대하고, 이에 맞추어 과태료 부과 대상도 정비함으로써 진료거부 행위에 대한 책임 주체와 제재 체계를 명확히 함(안 제11조 및 제41조제1항제1호).
- 공수의의 위촉·관리 및 감독 권한의 주체에 시·도지사를 포함하고, 위촉 자격 상실, 부정행위 또는 업무 수행 곤란 등의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며, 공수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체계를 정비함(안 제21조 및 제22조).
-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수행하는 수의사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그 위임·위탁 및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2 신설).

Ⅱ. 검토의견

- 안 제21조¹⁾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및 동물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일정한 업무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를 공수의라고 하며, 위촉한 공수의를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1조제3항은 공수의에게 일정한 해촉 사유가 있는 경우 공수의를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위촉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해촉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은 공수의의 위촉 자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는바, “위촉 자격을 상실한 경우”의 의미와 범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해촉 사유의 범위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음.

1) 안 제21조(공수의) ① 시장·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와 제6호의 업무만 위촉할 수 있다.

1. 동물의 진료
2. 동물 질병의 조사·연구
3.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6.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 “공수의(公獸醫)”라 한다]는 시장·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공수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수의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32조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등 위촉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4. 기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한편 제21조제1항에서는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등으로 공수의의 위촉 대상이 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은 사실상 공수의의 위촉 자격을 정한 규정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위촉 자격을 상실한 경우”의 의미와 범위가 제1항의 위촉 대상 규정과의 관계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안 제21조제3항에 따르면 공수의 위촉 자격을 상실한 경우도 임의적 해촉 사유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공수의의 위촉 자격은 수의사 면허의 유지 및 동물병원 개설 또는 근무 등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전제로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공수의를 계속 위촉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공수의 위촉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필요적 해촉 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함.

<수 정 의 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1조(공수의)	제21조(공수의)
① · ② (생 략)	① · ② (생 략)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③ -----
는 공수의가 다음 각 호의	-----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수의 의를 해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 <u>다만, 제1</u> <u>호에 해당하면 공수의를 해</u> <u>촉하여야 한다.</u>
1. 제32조에 따라 면허의 효력 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등 위촉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신 설 >	1. 제32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 제1항에 따 른 위촉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 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제32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정지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3. ----- ----- -----
4. 기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4. ----- ----- -----
	5. ----- ----- -----

○ 그 밖에 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음(주서본 참조).

(전문위원 최 기 도)